

정책 논제 토론에서의 반대 측 내용 구성 양상

이민형 서일중학교

- I. 연구의 필요성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 연구의 필요성

토론은 논제를 중심으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경쟁하는 의사소통 장르이다. 찬성 측이 ‘논제’를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반대 측은 반대로 해당 논제를 반박하기 위하여 다양한 설득 수단을 동원한다. 논제를 해석하는 틀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찬성 측에 비해, 토론의 반대 측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을 열기까지 토론이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반대 측이 토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찬성 측에 대응하는 순발력 외에도, 토론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 시각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재현(2014a, 2014b), 이민형(2015)과 같이 각 토론 논제의 유형에 따른 찬성 측의 입론을 다룬 연구는 있으나, 반대 측의 역할, 논증 구조, 입장 구성 그리고 세부 전략을 거시적으로 다룬 연구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토론 중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양측의 언어적 논박 행위를 기술하는 데 그쳐 있다(김주환, 2016a; 육영주, 2013).

이러한 연구는 구체적인 논쟁 속에서 행위자의 미시적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반대 측 토론자가 토론을 준비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거시적 시각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찬성 측의 역할과 별도로 부정 측 입론 전개 방식에 대해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는 최지원·허경호(2015), 김주환(2016b) 등이 있다. 먼저 최지원·허경호(2015)는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같이 반대 측 입론 전개 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반대 측 입론의 본질적인 기능이 논제를 부정하는 주장을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 측이 주장한 범위 내에서 찬성 측 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반박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주환(2016b)은 개념의 정의, 필수 쟁점, 이유와 근거 등을 중심으로 정책 논제 토론과 가치 논제 토론에서 일어나는 찬성 측과 반대 측 입론 전략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분석의 초점이 넓어, 토론의 반대 측 입론자들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정책 논제 토론을 중심으로, 실제 고등학교 토론 대회에서의 반대 측 토론자의 입론을 수집하여 반대 측 토론자들이 토론할 때 보이는 양상을 반대 측 토론자의 논증 구조, 현 상태에 대한 입장 구성, 그리고 구체적 논증 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정책 논제 토론에서의 반대 측 토론자의 거시적 역할, 그리고 전략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정책 논제(policy proposition)란 공동체가 미래에 시행해야 할 행위에 대해 다루는 논제이다. 정책 논제 토론에서 구성원들은 현재 공동체가 처해

있는 위험을 진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에 대해 갑론을박하게 된다. 이 때 이 정책 논제는 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거나 ‘폐지해야 한다’ 등의 서술어로 끝난다.¹⁾

토론에서 찬성 측은 선결조건을 갖춘 입론(prima facie case)²⁾을 제시하여 논제를 옹호해야 하는 대신, 논쟁의 중심이 될 만한 주장과 근거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찬성 측에 맞서는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면서 논제를 부정하고자 한다. 이때 반대 측 토론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찬성 측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논제에 드러난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지 등이 있다. 본절 이하부터는 반대 측이 토론을 운영할 때 필요한 내용, 즉 1) 찬성 측과 관계를 반영하는 반대 측의 논증 구조, 2) 논제에 서술된 정책에 대한 논리, 그리고 3) 반대 측이 주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해 기존 논의를 정리하여 실제 학습자들의 토론 양상을 분석할 틀을 마련한다.

1. 토론에서의 반대 측의 논증 구조

1) 반대 측 위상의 변화

학습자들이 토론에서 반대 측 역할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역할이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응하면 되는 것인지(찬성 측에 종속적), 혹은 찬성 측과

-
- 1) 미국의 경우 정책 논제에 대체로 ‘연방 정부는(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government)’ 등의 주어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촉구하는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 정부, 주 정부 등 정책 실행의 주체가 다양화되어 있는 미국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정책 논제는 주어가 생략된 채, 구체적인 행위만 제시될 때가 많다. 이것 역시 당연히 정책의 실현은 중앙 정부가 한다고 하는 한국적 사정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 2) 이는 찬성 측의 입안이 (아직 반박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완벽한 논리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Ericson et al., 2011/2013: 21).

다른 독자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지(찬성 측과 동등, 독립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토론의 반대 측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찬성 측의 주장에 반응하며 반박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의원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할 때, 반대 측이 해야 할 일은 의원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저지하는 것이지, 대통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토론의 관습이 변화함에 따라 반대 측의 역할을 ‘반박’과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좁게 보는 입장에서 반대 측도 어떤 일관된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며 그 입장을 토대로 반박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확대되었다.³⁾

즉 정책 논제 토론에서의 반대 측의 역할은 찬성 측에 ‘반’하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에서,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까지 점점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 중 최지원·허경호(2015)는 이러한 변화를 ‘혼란’으로 보고 경계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반대자의 위상의 공존을 토론 상황 중 반대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로 본다. 요컨대 반대 측 토론자는 찬성 측의 주장에 반응하고 반박하는 것을 주로 하는 ‘반응적(소극적)’ 반대자가 될지, 독자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주도적(적극적)’ 반대자가 될지 결정하여야 한다.

2) 반대 측의 위상이 구조화된 논증 구조

반대 측이 찬성 측과 관련하여 설정한 자신의 위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반대 측 특유의 논증 구조, L-R-I 구조이다. 토론의 역할은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토론에서 찬성 측은 논제를 입증할 책임을 지며 그 반대급부로 토론의 장에 새로운 주장을 도입하며, 토론의 틀

3) 예를 들어 칼 포퍼 토론 등은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똑같이 입증의 책임을 지며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토론에 개진하여야 한다.

을 형성할 우선권을 갖는다.

그렇다면 반대 측은 토론에서 어떤 책임과 권리가 있는가?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에 반응하여, 반박해야 한다는 책임(burden of rebuttal)을 진다. 다시 말해, 반대 측은 찬성 측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여야 한다. 반대 측도 논제에 관련된 생점을 토론에 도입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증을 단독으로 제기하지는 못한다. 기본적으로 반대 측은 반드시 찬성 측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반면에, 반대 측은 폭넓은 선택권을 갖는다. 반대 측은 선택적으로 논제를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자치 선거에서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제가 있다고 하였을 때, 찬성 측은 논제에 포함된 세부 사항, 지방 자치 선거, 투표 인센티브제 등을 모두 정당화하여야 하지만, 반대 측은 이들 세부사항을 모두 거부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지방 자치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지금 당장 도입이 아니라 몇 년 후 유예 기간 후에 도입하자고 논증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어도 해당 논제는 기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은 유연한 전략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선택에 따라야 하지만,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Hill & Leeman, 1997: 282-283).

이러한 반대 측의 책임과 권한을 구조화하여 Hill & Leeman(1997)은 반대 측 토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식 구조로 L-R-I 구조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반대 측 토론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증 구조가 될 만하다. L-R-I 구조란 반박하고자 하는 찬성 측의 주장을 제시하는 ‘반박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반응(the link)’, 그리고 본격적으로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을 밝히는 ‘반박의 근거 제시(the rationale)’,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반박 논증이 전체 토론에 미치는 중요성을 설명하는 ‘반박의 효과 강조(impact)’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 형식은 입론 등 반대 측의 발언 형식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뒤이어 논의할 모든 반대 측의 세부 논증 전략에 적용되는 범용적인 성격의 것이다. 즉 입론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the link), 이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장을 밝히며(the rationale), 자신의 선택적 반박의 효과를 명확히 하는 것 (impact)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주장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Hill & Leeman, 1997: 283-286).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반대 측 논증 형식으로 L-R-I 구조를 상정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논의하였던, 토론의 장에서 반대 측이 가져야 하는 반응의 책임과 선택의 권리를 구조화하면서도, 이후 반대 측이 토론을 주도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에 최적의 논증 구조가 된다. 그리고 이 논증 구조를 틀로 반대 측의 주장을 분석하면, 반대 측이 찬성 측의 주장에 반응을 보이는 데 비중을 두는지, 자신의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현 상태에 대한 반대 측의 논리 구성

또한 반대 측이 토론을 운영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논제에 드러난 정책적 행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는가이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은 바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과 '추정(presumption)'이다. 입증 책임과 추정은 논쟁의 장에서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역할을 규정한다. 특히 정책 논제에서 이 입증 책임은 현재 상태, 즉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정의된다. '변화'를 옹호하는 찬성 측은 토론 전반에 걸쳐 현재 상태를 비판하며 이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진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현재 공동체의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및선다. 즉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안정에 대한 희구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추정'이다. 반대 측은 이 추정을 근거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것이 정책 논제 토론에서의 전통적인 입증 책임과 추정의 개념이다.⁴⁾

4) 입증 책임과 추정은 본래 법률적 개념이다. 법정에서 원고 측이 피고가 죄가 있다는 것을

정책 논제 토론을 보는 고전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찬성 측의 입증 책임과 반대 측의 추정에 따라 현재 상태에 대한 공격자와 방어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정책 논제 토론의 관습이 점차 변화하면서, 반대 측의 역할도 다변화되었다. 즉 이전에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반대 측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정책 논제 토론이 운영되었다면, 점차 공동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찬성 측의 방안과 현재 상태 혹은 반대 측의 방안을 놓고 무엇이 더 나은지 면밀히 비교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⁵⁾

이러한 정책 논제 토론의 관습 변화에 따라 토론자의 역할을 큰 틀에서 규정하는 입증 책임과 추정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즉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맡았던 입증 책임과 추정의 성격이 유동적인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입증 책임과 추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청중이 판단할 문제가 되며, 찬반 중 보다 위험도(risk)가 크지 않은 제안을 한 쪽이 획득하게 된다(Freeley & Steinberg, 2013: 322). 반대 측은 찬성 측이 공격하는 현재 상태를 방어하면서 찬성 측 방안이 오히려 공동체에 불이익(disadvantage)이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현재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찬성 측의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방안(counterplan)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반대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논리를 구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네

'입증'하기 전까지는 피고는 '무죄'로 추정된다. 원고는 일단 법정에 들어온 이상, 피고가 유죄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수사적 상황을 정책 논제 토론에 응용한 것이 본문에서 기술된 입증 책임과 추정이다.

5) 이는 정책 논제 토론이 가장 전통적 모형인 전통적 필요 모형(tranditional need case)에서 비교 우위 모형(comparative advantage model)으로 변화하였음을 기술한 것이다. 박재현(2014a)에서는 전통적인 필요 모형으로부터 비교 우위 모형으로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다. 즉 법률, 제도, 정책 등이 모두 부재한 국가의 초기기에는 새로운 정책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주류였지만, 국가가 안정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문제의 단일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 변화가 새로운 정책 도입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보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 변화를 다루는 정책 논제 토론 모형도 변화가 필요하여 비교 우위 모형이 대두되었다.

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된다. 정책 논제는 현재 없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있는 정책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는 등 현재 상태의 변화를 꾀하는 쪽으로 서술된다. 따라서 논제에 함의된 현재 상태에 대해 반대 측이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뚜렷한 자신의 입장 없이 찬성 측의 주장에 반응하며 반박으로 일관하기, (2) 현재 상태를 옹호하기, (3) 현재 상태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기, (4) 대체 방안 제시하기이다(Ericson et al, 1987; Ziegelmuller & Kay, 1997; Wood & Goodnight, 2006). Ziegelmuller & Kay(1997)는 이러한 입장 유형의 차이는 현재 상태에 대한 관여(commitment), 즉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를 바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1)은 특정한 반대 측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2)로 갈수록 현재 상태대로 안정되기를 바라고, (4)로 가면 갈수록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에 긍정적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반대 측은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되 찬성 측의 방안이 잘못되었다며 방안 자체에 대해 반대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3. 반대 측의 세부 반박 전략

반대 측의 세부 반박 전략은 절차적 논증(procedural arguments)과 실질적 논증(substantive arguments)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절차적 논증은 찬성 측 논증의 실질적 내용을 반박하기 앞서, 찬성 측이 구성한 토론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 반박하는 논증이며, 실질적 논증은 찬성 측 논증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논증이다(Hollihan & Baaske, 2005).

1) 찬성 측이 선정한 입론 틀에 대한 반박 전략

절차적 논증(procedural arguments)은 논증의 실질적 내용(substance)

보다는 찬성 측이 형성한 토론의 틀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논증이다. 토론과 논제 전반에 관련된 수행 혹은 절차에 대해 문제 삼는 의미를 갖는다. 논제 관련성(topicality), 입증 책임과 추정, 찬성 측의 선결조건을 갖춘 입론 수행 여부 등이 절차적 논증에 속한다(Wood & Midgley, 1989; Hill & Leeman, 1997; Wood & Goodnight, 2006).

절차적 논증 중 가장 대표적 논증 유형은 논제 관련성 논증이다. 찬성 측의 책임은 논제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성 측은 이러한 책임의 반대급부로 논제의 핵심 용어 등을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찬성 측은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찬성 측이 제시한 논증이 논제가 아닌 다른 것을 다루거나 논제를 잘못 정의한다면, 찬성 측이 아무리 토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논제를 입증할 수 없다. 이때 찬성 측이 잘못 정의를 하거나 논제를 잘못 해석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논증이 바로 논제 관련성 논증이다. 특히 정책 논제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제안하는 개념 정의와 방안이 논제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입증 책임과 추정 또한 반대 측 논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찬성 측은 입증 책임을 지며, 반대 측은 추정에 의거하여 반박하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찬성 측은 추정이 오히려 자신 쪽에 있으며, 반대 측이 입증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반대 측 또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거나 ‘추정’의 강도를 높이려고 노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선결조건을 갖춘 입론 형성의 부족을 지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찬성 측이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필수 쟁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반대 측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이 반박을 할 필요도 없이, 찬성 측의 입론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2) 찬성 측의 입론 내용에 대한 반박 전략

찬성 측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는 것이 ‘실질적 논증’이

다. 반대 측이 주로 사용하는 실질적 논증으로는 ‘찬성 측 방안이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기(이하 ‘불이익(disadvantage)’), ‘찬성 측의 가치 기반과 용어 비판하기(이하 ‘비판(critique)’), ‘찬성 측 방안의 해결 가능성 반박하기(이하 ‘해결 가능성(solvency)’ 등이 있다. 이들은 찬성 측이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논증들과는 별도로 반대 측이 주도적으로 해당 토론의 장에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 논증들이다.

(1) 찬성 측 방안이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기

찬성 측이 주장하는 정책을 실시하면 우리 사회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대 측이 토론을 주도하기 위하여 꼭 활용해야 할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을 경우, 반대 측은 이를 악용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도덕적 해이가 바로 해당 정책의 불이익에 해당한다. 찬성 측은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의 불이익을 최대한 숨기거나 다르게 포장하려 하기 때문에 이 불이익 논증은 반대 측이 토론의 장에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의 방안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정확히 지적하고, 왜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지 인과 관계를 밝혀야 하며, 이는 현재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찬성 측의 방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를 참고하여 불이익 논증의 종류를 ‘찬성 측 방안과 불이익의 관계’, ‘불이익의 근원’, ‘불이익의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반대 측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현재 상태가 아니라 찬성 측 주장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대 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불이익과 찬성 측 방안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⁶⁾ 첫 번째는

6) 이 두 가지 방식을 관습적으로 ‘벼랑 끝(on the brink)’ 접근, ‘선형적 증가(linear pro-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방안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찬성 측의 방안 때문에 더 안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불이익이 논제 행위 본질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 측 방안의 특정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일반적 불이익(generic disadvantage)은 보다 폭넓은 범위의 불이익이다. 이는 논제에 나타난 행위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범주의 불이익은 논제 행위 자체가 불러오는 부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찬성 측이 해당 논제로 어떤 주장을 하든 적용될 수 있는 불이익이다. 따라서 반대 측은 논제를 보고 찬성 측의 입론을 듣기 전 미리 개발할 수 있다. 반면 찬성 측 방안의 구체적 측면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case-specific disadvantage)은 반대 측이 찬성 측의 방안을 듣고 나서 그 세부 사항에 대해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둘은 각각 장점이 있다. 일반적 불이익은 해당 논제에서 나올 법한 찬성 측의 입론에 두루 사용될 수 있는 것이며, 특정 입론 불이익은 찬성 측의 입론에 더 밀착되어 있으며, 더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다(Ziegelmüller & Kay, 1997).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성 측 주장이 우리 사회에 주는 불이익의 성격에 따라 불이익 주장을 분류할 수도 있다. 즉 해당 불이익이 통계, 수치 등으로 증명될 수 있는 양적인 것인지, 아니면 통계나 수치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gression)' 접근이라고 부른다. 먼저 벼랑 끝 접근은 현재 상태가 불이익을 경험하기 전 절벽에 있는 것과 같으며, 찬성 측의 방안이 이 불이익을 일으키는 최후의 편치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선형적 증가 접근에서는 불이익이 선형적으로 점차 이루어지며, 현재 상태에 이미 해로운 결과는 존재하지만, 찬성 측 방안을 수행하면 더 사태가 심각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Hill & Leeman, 1997: 307).

(2) 찬성 측의 가치 기반과 용어 비판하기

이는 찬성 측 방안이 기초하고 있는 가치 기반에 도전하거나 찬성 측 주장의 용어 표현과 그 영향을 검증하는 논증이다. 이 비판 논증은 Berube(2002) 등에서 언급하듯이, 가치 논제 토론과 정책 논제 토론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전형적인 정책 논제 토론에서는 해당 정책을 받아들였을 때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토론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반대 측은 정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뿐 아니라 정책이 기초하고 있는 가치 기반과 전제, 혹은 언어적 표현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찬성 측이 학습자들의 학력을 교육부가 잘 측정할 수 없다며 일제 고사 도입을 주장한다면, 반대 측은 일제 고사 도입에 드는 비용, 일제 고사 시 학습자들이 입을 상처 등을 불이익으로 들어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일제 고사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교육의 의미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을 다루는 논제에서는 ‘양심적’ 등의 어휘 사용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다. 요컨대 비판 논증은 어떤 주장 뒤에 전제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가치에 대한 것이다.

(3) 찬성 측 방안의 해결 가능성 반박하기

‘찬성 측 방안의 해결 가능성 반박하기’는 찬성 측의 방안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여러 미비점으로 인해 찬성 측이 바라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Wood & Goodnight(2006: 228-230)는 반대 측이 찬성 측 방안의 해결 가능성을 반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논증의 하위 유형으로 ‘찬성 측이 분석한 문제의 원인 반박하기(alternative causality)’, ‘실행 가능성 반박하기(workability)’, ‘당사자들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본질적인 방안이 아님을 주장하기(circumvention)’ 등이 있다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논제 토론에서 반대 측 토론자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론 대회 수행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기대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학습자들의 토론 수행 중 주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이다. 입론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항해 제시된 첫 번째 입론에서 반대 측이 설정한 반박의 초점, 입장의 기조 등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 대상이 되는 토론 대회의 기준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발언 순서, 참여자의 역할 등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1회 이상 실시되어 토론 수행 자료가 풍부하게 확보될 수 있는 대회로 삼아 선택하였다. 또한 반대 측 입론이 분석의 중점인 만큼 입론 시간이 2분 이상 확보될 수 있는 대회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회방송’에서 2012년에서 2013년까지 2년 간 방송된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시즌 3’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엔터테인먼트와 흥행의 요소를 많이 가미한 다른 학생 토론 프로그램 보다 상대적으로 토론 대회의 진지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최근 방송분부터 정책 논제 토론으로 수행된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⁷⁾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토론의 논제는 〈표 1〉과 같다.

7) 해당 프로그램에서 취하고 있는 토론 대회 형식은 다음과 같다. 모두 3라운드로 나뉘지는 데, 1라운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2분씩 입론을 한다. 그리고 2라운드는 서로 주장과 반박을 직접 주고받는 교차 토론이며 중간에 중간 평가를 토론자에게 공개한다.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는 최종 변론이며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역시 2분씩 발언하게 된다.

〈표 1〉 분석 대상 토론의 논제

기호	분석 대상 토론의 논제	방송일
A-1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2013.06.22
A-2	비만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2013.06.15
A-3	팀정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2013.06.08
A-4	9월 학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2013.06.01
A-5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3.05.18
A-6	담배요금을 2천원 인상하여야 한다.	2013.05.04
A-7	소년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2013.04.13
A-8	군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2013.03.23
A-9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3.01.19
A-10	종교시설에 과세해야 한다.	2013.01.12
A-11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야 한다.	2013.01.05
A-12	만 0~2세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2.12.22
A-13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해야 한다.	2012.12.15
A-14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2012.12.08
A-15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하여야 한다.	2012.12.01
A-16	선행학습을 허용하여야 한다.	2012.11.24
A-17	졸업사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2012.11.17
A-18	학교폭력 전과를 학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012.11.03
A-19	사형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012.10.27
A-20	고교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2.09.15

해당 토론 대회의 논제는 토론 논제 기술의 원칙⁸⁾이 지켜지지 않은 것
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토론의 화제’가 되는 대상을 명사구로 제시하

8) 1) 단 하나의 중심적인 논쟁점이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논제는 단문의 서술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논제는 분명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3) 찬반 어느 한편에 유
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감정이 담긴 표현은 배제해야 한다. 4)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의
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5) 논제가 만일 채택되었을 경우 찬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형
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6) 논제는 긍정적인 형태로 기술되어야 한다(한상철, 2006)는 것
등이 토론 논제 기술의 보편적 원칙이다.

거나 의문문 형태로 제시한 것들이 많았다. 이러한 논제 기술은 이후 토론 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논제들은 실제 토론 수행 과정을 살펴 바로잡아 기술하거나, 아예 분석 대상에서 삭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을 박용익(2010)의 ‘텍스트식 전사 방법’⁹⁾에 의거하여 전사 하였다. 그리고 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해당 자료를 ‘사고 단위’로 나누었다.¹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난 삼월 육일 담뱃값 인상안이 발의되었습니다.[**논제 배경 제시**] 하지만 지금 현재 담뱃값 인상안은 그 목적과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문제 제기**]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담배가격 인상안이 국민의 흡연율 감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데 전제를 두고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주장의 전제 제시**]

위 예시에서 사고 단위는 ‘논제 배경 제시’, ‘문제 제기’, ‘주장의 전제 제시’ 등이다. 이는 문단 등 형식 단위와는 차별화되며, 해당 텍스트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연구자가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이후 분석의 정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론 교육 전문가 2인¹¹⁾에게 연구자가 토론 전사 텍스트의

-
- 9) 이는 우선 한 명의 말할이에 국한하여 발화(연속체), 즉 대화 기여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사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말할이의 대화 기여를 전사하는 것이다. 이는 독화적 텍스트의 형식을 갖는다(박용익, 2010: 239).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찬성 측, 반대 측은 상대방의 개입에 의해 말 끊김 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 주로 독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텍스트식 전사 방법을 선택하였다.
 - 10) 이는 맥크로스키(McCroskey, 1978)의 용어로, 의사소통의 개별 기능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을 논의하기 위해 세부 부분을 나누는 가장 효과적인 단위’라고 하였다(박재현, 2006: 67).
 - 11) 토론 연구회 소속 교사(토론 교육 현장 12년 경력), 토론 석사 학위 교사(현장 6년 경력) 2인이다.

사고 단위를 분석한 것을 검토받았다. 그리고 이후 해당 전문가들에게 연구자의 분석 틀을 공개하고, 이미 분석한 사고 단위들이 연구자의 분석 틀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재차 검토하였다.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분석 틀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틀과 요소

논증 구조	현재 상태에 대한 입장	세부 전략	
		절차적 논증	실질적 논증
L(찬성 측에 대한 반응)	- 반박으로만 일관하기	- 논제 관련성	- 불이익 주장
R(반박 근거 제시)	- 현재 상태 옹호하기	- 입증 책임과 추정	- 가치 기반과 용어 비판
I(반박 효과 강조)	- 현재 상태 수정 보완하기 - 대체 방안 제안하기	- 선결조건을 갖춘 입론	- 해결 가능성 반박

본 연구에서는 II장의 이론적 논의에 따라 반대 측의 토론 수행을 분석할 틀을 <표 2>와 같이 반대 측 토론자의 논증 구조, 현재 상태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 반대 측이 구사하는 세부 전략(particular strategy)으로 나누었다. 토론자가 토론 수행 중에 고민해야 할 것이 ‘어떤 입장에서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내용을 발언하는가’라고 할 때, 위의 분석 틀은 해당하는 요소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먼저 논증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반대 측이 찬성 측과 맺는 관계를 알 수 있다. 반대 측이 찬성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반응적(소극적) 입장인지, 찬성 측과 동등하게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주도적(적극적) 입장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반대 측의 기본적인 논증 구조는 ‘반응’-‘반박의 근거’-‘효과 강조’로 이루어진 L-R-I 구조임을 논의한 바 있다. 반응적 반대자일수록 이 구조에서 반응 부분이 비중이 클 것이며 주도적 반대자라면 반대로 이 부분이 소략할 것이다 이 논증 구조가 학습자들의 입론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검토하여 반대 측 토론자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둘째, 반대 측의 입론에 드러난 현재 상태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다. 반대 측은 논제에 함의된 현재 상태에 대한 입장은 정하여야 한다. 이때 반대 측 입장은 뚜렷한 입장 없이 찬성 측에 반응하며 반박만으로 일관하기(direct refutation), 현재 상태를 옹호하기(defense the status quo), 현재 상태를 수정, 보완하기(minor repair), 대체 방안 제안하기(counterplan) 등으로 반대 측 입장의 기조를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이 논쟁에서 활용하는 주요 세부 전략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세부 전략은 찬성 측이 선정한 입론 틀에 대한 반박인 절차적 논증과 세부적 입론 내용에 대한 반박인 실질적 논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절차적 논증의 분석 요소에 ‘논제 관련성’, ‘입증 책임과 추정’, ‘선결조건을 갖춘 입론’ 수행 여부를 타진하는 것을 포함시켰으며, 실질적 논증의 분석 요소로는 반대 측이 토론을 반대 측 중심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논증인 ‘불이익’과 ‘해결 가능성’, 그리고 ‘비판’을 선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III장에서 밝힌 분석 틀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석 자료에서 드러난 요소를 개괄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자료 분석 결과의 개괄

범주	분석 요소	빈도
논증 구조	L-R-I	0%
	L-R	10%(2/20건)
	R-I	65%(13/20건)
	R	25%(5/20건)

현재 상태에 대한 입장	반박으로 일관하기	0%(0/20건)	
	현재 상태 응호하기	55%(11/20건)	
	현재 상태 수정 보완하기	15%(3/20건)	
	대체 방안 제안하기	30%(6/20건)	
세부 전략	절차적 논증	논제관련성	100%(8/8건)
		입증 책임과 추정	0%
		선결조건을 갖춘 입론	0%
	실질적 논증	불이익 주장	40%(16/40건)
		가치 기반과 언어 사용 비판	27.5%(11/40건)
		해결성 비판	32.5%(13/40건)

〈표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분석 대상인 반대 측 입론에서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응(the link) - 반박의 근거 제시(the rationale) - 반박 효과 강조(impact) 구조를 모두 갖춘 입론은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강조' 부분이 없이 반박의 근거만을 나열한 입론도 5건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R-I 구조를 보였다.

또한 반대 측은 현재 상태를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힐과 리만(Hil & Leeman, 1997)이 드물다고 하였던 대체 방안을 반대 측 입장으로 삼은 사례도 6건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부 논증 전략에 있어서는 절차적 논증인 논제 관련성이 8건 사용되었으며 다른 절차적 논증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러한 논제 관련성 주장도 실질적으로 절차적 논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실질적 논증에서는 불이익 주장이 16번 사용되어, 본 자료의 반대 측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해결 가능성 주장과 비판 모두 드물지 않게 활용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들 범주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와 질적 분석 양상을 기술한다.

1. 반대 측이 구성한 논증 구조의 양상

다음 <표 4>는 본 자료에서 L-R-I 구조가 드러난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표 4> 반대 측의 논증 구조 양상

논증 구조	내용 구성 양상	해당 자료	빈도
반응(L)	찬성 측 주장의 언급과 구체적인 반박	A-4, A-5	10% (2/20건)
반박의 근거 제시(R)	논제 배경 제시	A-1, A-2, A-3, A-4, A-6,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80% (16/20건)
	재정의	A-1, A-7, A-10, A-15, A-16, A-17, A-20	35% (7/20건)
	문제를 다루는 초점 제시	A-3, A-5, A-8	15% (3/20건)
	논의의 전제 제시	A-6	5% (1/20건)
반박 강조(I)	자신의 주장 요약	A-1, A-11	4% (2/20건)
	논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제시	A-7, A-8, A-18	6% (3/20건)
	자신의 주장 중요성 강조	A-9, A-10, A-13, A-15, A-19, A-20	30% (6/20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	A-14, A-16	10% (2/20건)

본 자료에서는 <표 4>와 같이 ‘찬성 측에 대한 반응’(L)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찬성 측 주장을 직접 언급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반박 근거 제시(R)’ 부분에서는 대부분 논제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거나, 재정의를 하고, 반박 측이 다룰 세부 주장의 전제 혹은 초점 등을 언급하여 반대 측에 유리하게 프레이밍을 하고 있었다.¹²⁾ 그리고 마지막 ‘반박 효

12)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반박 근거 제시’ 부분에서 수행되는 구체적 세부 주장은 후술하기로

과 강조(I)' 부분에서 반대 측은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고, 다시 한 번 논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는 자신의 주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

분석 결과로 보았을 때, L-R-I 구조를 모두 갖춘 반대 측의 입론은 없었고, 90%의 입론이 직전에 일어난 찬성 측 입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바로 펼친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은 찬성 측이 제시한 입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 없이,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입론을 펼쳐, 반박의 근거(the rationale), 그리고 반박의 효과 강조(impact)만으로 구분되는 R-I 구조를 보였다. 이는 아마도 학습자들이 반대 측의 역할을 찬성 측의 입론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측과 대등하게 논제에 대한 독자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역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찬성 측의 입론을 듣고 즉석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이에 반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논제를 보고 미리 준비한 것에 의존하여 입론을 수행한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대 측이 찬성 측과 연계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미란·허경호(2012), 최지원·허경호(2015) 등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들은 반대 측 입론자가 찬성 측 입론에 대한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입론을 펼치는 것이 토론을 동문서답이나 독백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 앞서 논의했듯이 반대 측이 찬성 측의 논의에 대해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책임'과 '권리'로 정교하게 짜여진 토론자의 역할 분배에 위배가 될 수 있다.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반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선결조건을 갖춘 입론을 펼쳐야 하는 찬성 측의 책임과 비교하였을 때 불공평한 게임이 된다.

하고, 구체적 세부 주장을 하기 직전 특징적인 전개를 보이는 부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A-5] 서머타임제의 실효성 여부와 우리나라의 특수성, 인간의 개인적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희 측은 서머타임제 실시에 반대합니다. 첫째,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서머타임제의 경제적 효과는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고 편차가 큽니다(후략).

[A-5]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개의 자료 중 찬성 측의 주장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여 ‘반응’(L) 부분을 구현한 2개의 입론 중 하나이다. 이 반대 측 입론에 앞서 찬성 측은 서머타임제가 여러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주장하였는데, 반대 측은 이러한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R-I 구조를 보이며 주도적 반대자로서 입론을 펼친 자료들이 여미란·허경호(2012), 최지원·허경호(2015) 등의 논의처럼 찬성 측 주장과 연관 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반대 측 입론은 찬성 측의 주장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R 부분 초반에서 논제에 대한 배경을 서술하거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논제를 매개로 한 찬성 측 주장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반대 측은 ‘반박 근거 제시’(R 구조)의 초입부에서 논제에 드러나 있는 행위를 반대 측 나름대로 재진술¹³⁾하고, 논제의 배경을 청중에게 설명하면서 반박에 돌입하고 있다.

[A-2] 2011년 비만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덴마크가 이를 시행한 지 일 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덴마크 정부에서 밝힌 목적 아니 원인은 큰 사회적 비용과 원래의 목적인 비만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후략).

[A-15] 투표율이 계속해서 낮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투표 인센티브

13) 이 과정에서 반대 측도 찬성 측과 동일하게 논제에 대해 개념 정의를 내리는 행태가 자주 보인다. 이는 이후 절차적 논증 부분에서 기술한다.

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표 인센티브제란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투표율 향상을 위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A-2]에서 반대 측은 문제가 되는 ‘비만세’라는 논제에 대해 부정적인 배경을 언급함으로써 입론을 시작한다. 또는 [A-15]와 같이 논제인 ‘투표 인센티브제’에 대해 재정의를 내리며 입론을 시작한다.

이민형(2016)은 타 유형의 논제와 대비되는 정책 논제 토론의 특성을 ‘주장 혹은 방안 구체화 초점(case or plan focus)’이라고 하였다. 즉 정책 논제 토론의 찬성 측은 논제를 그 첫 번째 입론에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반대 측 토론자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공개한 입론에서의 방안이 논제를 제대로 해석하고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우선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그 공격의 화살을 찬성 측 방안에 옮겨, 방안 성립의 정당성과 해결성 등에 대해 논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논제 토론은 찬성 측이 논제를 구체화한 방안과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분석 자료에서 드러난 정책 논제 토론에서 찬성 측은 논제에 드러난 행위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거나 혹은 정책의 세부 사항을 삽입해 충분히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현하고 있지 않으며, 논제를 재확인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입론을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반대 측도 굳이 논제의 재확인 격인 찬성 측의 입론에 초점을 맞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찬성 측의 입론과 논제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리 준비한 반박을 펼친다.

[A-2] 우리나라는 비만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일까요? 성인 남자 세 명 중 한 명 여자는 네 명 중 한 명이 이미 비만입니다. (중략) 첫째 비만은 이미 사회적 문제입니다(후략).

이는 앞서 분석한 비만세 관련 논제의 찬성 측 입론이다. 찬성 측 입론은 비만세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하고, 비만세를 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기보다는 논제 행위가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 측도 찬성 측이 주장한 구체적인 비만세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논제에 드러난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반박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관찰한 반대 측 토론자는 논제를 구체화한 찬성 측 입론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다기보다는 논제와 찬성 측의 입론을 동일시함으로써, 논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며 간접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정책 논제 토론의 관습에서는 찬성 측이 논제를 구체화한 방안을 입론에 제시하며, 반대 측은 이 방안을 즉각 검토하여 반박한다. 따라서 찬성 측 입론이 토론의 중심에 서게 되며, 반대 측 입론에서도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응, 반박(L 구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토론에서 찬성 측 입장은 논제에 나타나 있는 행위를 구체화했다기보다는 논제 행위의 정당성, 근거 등을 다시 재확인하는 수준의 것이었으며, 이는 본 연구 분석 자료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습자들의 토론 수행 양상과도 일치한다. 찬성 측 입장이 논제에 대한 구체화가 아니라 재확인이므로, 반대 측 토론자는 굳이 찬성 측 입론과 연결고리를 맺지 않더라도, 논제를 매개로 간접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토론의 접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반대 측 토론자에게는 토론에 대한 준비 면에서도 간편할 것이다.

[A-6] 또한 담배는 소비자 물가 품목 중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십번째로 큰 품목입니다 담배가격 인상하는 것은 전체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저소득층에게 고충이 더욱 더 가중될 것입니다.

또 [A-6]에서는 담배값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반박의 근거를 끝으로 입론을 마무리하여, ‘반응’과 ‘효과 강조’가 없이 ‘반박의

근거'만 있는 구조를 보인다. 앞서 반대 측은 '선택'적 공격의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때 이 '효과 강조'는 바로 이 '선택'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상대방과 토론 평가자에게 명확히 하는 부분이다. 즉 상대방과 토론 평가자에게 반대 측이 '선택한' 논증이 찬성 측의 주장을 어떻게 논파하였으며, 논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화하는 부분인 것이다(Hill & Leeman, 1997: 284).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부연 설명하거나, 논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하였다. 그러나 [A-6] 경우 반박의 근거만 제시하고 이러한 반박이 토론 평가자의 의사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이, 급하게 논의를 마무리 짓는 양상 또한 관찰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주도적 반대자'의 위상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었다. 그 결과 반대 측의 권리와 책임이 드러나는 L-R-I 구조에서 상당부분 L구조가 약화되고 R-I 구조로 입론을 구성하는 양상이 보였다. 그러나 기존 논의와는 달리, 이러한 R-I 구조가 찬성 측의 입론과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찬성 측 입론이 논제를 구체화하기보다는 재확인하는 수준의 입론이기 때문에, 반대 측도 찬성 측 입론 보다는 논제를 매개로 찬성 측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전략상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

2. 현재 상태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 양상

반대 측은 자신의 주장의 전체적인 논리를 고려할 때 반드시 논제에 함의되어 있는 현재 상태(status quo)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 논의에서 반대 측의 입장은 현재 상태와의 관계를 변수로 '찬성 측의 주장에 반응하며 반박만으로 일관하기', '현재 상태를 옹호하기', '현재 상태를 수정 · 보완하기', '대체 방안 제시하기'로 나

눌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는 전통적인 입장인 현재 상태에 대한 응호가 11건으로 대체 방안 제시하기(6건), 현재 상태를 수정하고 보완하기(3건)에 비해 다수로 드러났다. 그런데 찬성 측의 입장에 반박으로만 일관하는 입장은 한 건도 없었다. 즉 본 연구 자료에서의 반대 측은 찬성 측 입장에 대한 ‘순수 부정’보다는 어느 정도 일관된 입장을 정하고 그 토대에서 찬성 측의 의견을 반박하려고 하였다.

반대 측이 가장 많이 선택한 ‘현재 상태에 대한 응호 입장’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상태에 대한 ‘명시적 응호’와 ‘암묵적 동의’의 양상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세부 분석 자료를 <표 5>와 같이 제시한다.

<표 5> ‘현재 상태를 응호하기’의 내용 구성 양상

하위 범주(사고 단위)	해당 자료	비율
현재 상태에 대한 명시적 응호	A-4, A-5, A-7, A-8, A-9, A-12, A-17	7/11(63%)
현재 상태에 대한 암묵적 동의	A-6, A-15, A-16, A-20	4/11(36%)

<표 5>를 보면 현재 상태를 명시적으로 응호한 쪽이 7건으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대 측은 “소년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9월 학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논제에서 현재 상태를 명시적으로 응호하였다. 이들 논제는, 현재 상태가 상당한 법률적 정당성을 가진 법률이거나(소년법), 굳건한 체제적 전통(3월 학기제)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반대 측은 이를 명시적으로 응호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A-7] (전략) 현대의 국가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대리 처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가해자 역시 단순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우리가 포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소년법은 소년에게 이 생각을 반영해서 가해자의 행

동 교정 그리고 사회화를 목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소년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후략).

[A-7]은 최근 급증하는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년법을 폐지하는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 반대 측의 입론이다. 이들은 현재 상태인 소년법을 옹호하면서 소년법의 근간인 국가가 국민을 보는 시각, 그리고 미성년자의 특성 등을 들어 소년법이 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4] (전략)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균관은 삼월을 입학시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밀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등은 그들의 문화적 풍토를 바탕으로 하여 구월 학기제를 도입한 것입니다(후략).

[A-4]는 9월 학기제에 반대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3월 학기제를 옹호하고 있다. 즉 소년법과 같은 법률, 그리고 학기제와 같은 오랜 전통을 가진 체제는 상대적으로 옹호하기 수월하여 반대 측이 이러한 전략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 대해 명확한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정책이 구체적인 정책 논제로 형성되고,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이를 토론하기까지 될 정도에는 현 상태가 문제라고 하는 데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을 때가 많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보다는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큰 틀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견지하는 경우가 많다.

[A-15] 인센티브제는 투표율 하락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A-15]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나, 투표 인센티브제가 없는 현재 상태가 낫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A-20] 학습선택권의 허용으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중략) 실제로 국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입학 확률의 경우 사교육이 성행하는 강남 지역이 충북 증평군 지역보다 약 오십 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학습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20]에서는 현재 상태가 완벽하지 않고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있다 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나, 고교생들에게 학습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찬성 측의 방안은 그 문제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 현재 상태가 가진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찬성 측의 방안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이미 있는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재 상태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입장이 있다. 이는 약 3건의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입장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반대 측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지면서도 찬성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들어가야 해서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은 현재 상태의 수정과 보완이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A-11] 현재 시행중인 제도들의 안정적 보장이 대체공휴일 보장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로서 보장되었지만 잘 되고 있지 않은 주 40시간 근무제 주 5일제 적극적인 연차 사용 장려 등을 업무능력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A-11]에서는 현재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인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재 제도로서 보장되었지만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주 40시간 근무제, 주 5일제, 적극적인 연차 사용 장려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이 예로 들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 주 5일제, 적극적 연차 사용 장려 등은 현재 상태 안에 속해 있어, 찬성 측의 제안과 확실히 변별되면서도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실히 반대 측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하는 반대 측의 입장이 있다. 대체 방안(counterplan)은 현재 상태를 옹호하는 반대 측의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찬성 측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어느 쪽이 더 좋은 대안인지를 논증하는 것으로 토론을 운영하는 것이다. 대체 방안을 제시하면서, 반대 측은 단순히 찬성 측의 방안에 반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게 된다(Wood & Goodnight, 2006: 195).

기존 논의(Hill & Leeman, 1997)에서는 반대 측이 대체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고 하였지만, 본 분석 자료에서는 반대 측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6건, 30%)로 대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본 분석 자료에서 반대 측은 대체 방안을 내세우되,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 구체화된 대체 방안을 내세우지는 못하고, 해결 방법의 기초 등만을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 측의 기본적인 책임이 찬성 측의 방안을 반박하고 논제를 기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반대 측의 입장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청중이 품을 수도 있다.

다음 [A-1]은 반대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찬성 측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체 방안을 제출하는 입장에 선 입론이다.

[A-1]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고용시장에 필요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아닌 전체 일자리의 질 개선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보다 복지 체계를 개선하고 고용 노동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됩니다(후략).

[A-1]에서 반대 측은 현재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복지 제도와 고용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대체로 본 자료에서 확인한 반대 측의 대체 방안은 [A-1]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 ‘복지 제도와 고용 체계의 개선’과 같은 해결 방법의 기조만을 확인하고 끝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정책 논제 토론에서 구체적인 방법(how)에 대한 공방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한 탓으로 보인다.

3. 반대 측의 세부 전략 양상

1) 절차적 논증의 전반적인 미비

본 연구가 분석한 자료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그리고 유일한 절차적 논증은 바로 논제 관련성이었다. 나머지 입증 책임과 추정, 그리고 선결 조건을 갖춘 입론을 요구하는 논증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유일하게 드러난 절차적 논증인 논제 관련성 논증도 절차적 논증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시 되었다. 즉 반대 측은 습관적으로 찬성 측과 다른 정의를 제시하며 재정의를 하였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찬성 측의 입론이 아니라 논제와 자신의 주장을 연계하는 ‘간접 반응’에 속하며, 찬성 측이 짠 토론 틀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였다.

[A-16] (전략) 저희가 반대하는 선행학습의 범위는 교육 기관인 학교의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입니다. 이 중 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은 초·중학 과정에 있어서 만연한 선행학습입니다.

[A-16]에서 반대 측은 선행 학습의 범위를 ‘교육 기관인 학교의 교육과 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이라고 재정의하지만, 재정의를 한 이유와 근거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본래 개념 정의는 찬성 측의 권한이며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이 이 정의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재정의를 하려면, 찬성 측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A-16]은 이러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찬성 측의 정의가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도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정의가 찬성 측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접점을 만들어 논쟁하지 못했다.

[A-16]과 같이 절차적 논증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개념 정의’의 문제와 함께 다른 절차적 논증 자체가 부재한 것은 토론자들이 개념 정의의 우선권, 입증 책임과 추정,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역할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까닭으로 추측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란할 수 있는 실질적 논증과는 달리, 절차적 논증은 찬성 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제 해석이 합당한지 등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거시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 다른 [A-10]의 사례를 보자. 이는 절차적 논증이 반대 측 논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희귀한 사례이다.

[A-10]

찬성: 종교시설은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교의 목적에 필수적인 시설과 부차적인 시설을 구분하였고 이중 과세의 대상을 부차적인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후략).

반대: (전략) 토론에 앞서 저희 측은 현행 건축법과 사회적 통념을 기반으로 종교시설을 종교단체가 소유한 시설로서 종교활동 혹은 사회 공헌에 사용되는 시설로 정의하겠습니다. (중략) 첫째 종교 단체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

입니다. (중략) 둘째 종교 단체가 사회공헌시설을 운영하는 것 또한 종교 단체의 고유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10]의 앞에서 찬성 측은 종교 시설을 종교 행사에 필수적인 시설과 부차적인 시설로 구분하여 부차적인 시설에 과세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반대 측은 종교의 역할을 ‘종교 활동’으로만 좁게 해석한 찬성 측에 반발하면서, ‘사회 공헌’도 종교의 핵심적 역할과 고유한 목적 중 하나라고 반박하였다.

이 사례에서 반대 측은 비교적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탄탄한 반대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측의 개념 정의인 ‘부차적인 시설’이 왜 ‘사회 공헌 시설’로 재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바로 재정 의에 돌입하여 반대 측 논리의 기본 출발점인 ‘왜 반대 측의 정의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요컨대 절차적 논증은 논증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찬성 측이 형성한 토론의 틀에 대한 논증이다. 따라서 자신과 찬성 측의 토론에 대한 책임, 토론의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분석 자료에서의 반대 측은 찬성 측이 개념 정의를 하지 않는 등 선결조건을 갖춘 입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입증 책임, 추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등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역할, 거시적 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절차적 논증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2) 불이익, 비판, 해결 가능성 논증의 내용 구성 양상

(1) 불이익의 내용 구성 양상

반대 측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바로 찬성 측의 방안이 우리 사회에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Ziegelmuller & Kay(1997)는 찬성 측의 방안이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대 측이 보다 공격적인 태도로 토론에 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불이익 주장 범주의 하위 사고 단위가 관찰된 양상은 <표 6>과 같다.

<표 6> 불이익 논증의 내용 구성 양상

하위 범주(사고 단위)		해당 자료	빈도
찬성 과의 관계	현재 상태의 문제를 악화시킴	A-1, A-3, A-5, A-9, A-16, A-20	37%(6/16건)
	현재에 없는 문제를 새롭게 발생시킴	A-2, A-4, A-6, A-7 A-8, A-11, A-12, A-13, A-14, A-15	62.5%(10/16건)
불이익의 근원	제도의 본질에 내재한 불이익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1, A-12, A-13, A-14, A-15, A-16, A-20	100%(16/16건)
	제도의 구체적인 부분, 절차 등에 내재한 불이익	-	0%
불이익의 성격	양적 불이익	A-4, A-6, A-11, A-13, A-20	31.2%(5/16건)
	질적 불이익	A-1, A-2, A-3, A-5 A-7, A-8, A-9, A-12, A-14, A-15, A-16	68.7%(11/16건)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반대 측의 불이익 주장 양상은 크게 ‘찬성 측 방안과의 관계’, ‘근원’, ‘성격’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반대 측이 주장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현재 상태에는 없는데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방안이 새롭게 발생시킨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 내재해 있다가 찬성 측의 제안으로 인하여 문제가 악화되는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이 두 가지 양상의 불이익 논증을 모두 자주 사용하고 있었지만, 논제에 드러난 행위가 현재 없는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주장이 16건 중 10건, 62.5퍼센트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불이익이 전적으로 찬성 측 방안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다 선명한 주장을 펼치는 데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8] 두 번째로 군복무기간 단축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키면 병사는 1년간의 훈련 뒤 곧바로 육 개월 밖에 실전에 투입될 수 없

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에 삼차 핵실험 등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 위협이 커져 가는 이때 병역 자원 부족과 숙련도 저하는 자기국방력에 치명적입니다.

[A-8]에서 반대 측은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사 숙련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병사 숙련도 저하는 전적으로 찬성 측 제안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서 반대 측이 제시한 불이익은 찬성 측 방안의 어느 구체적인 절차 혹은 세부 사항 때문에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논제에 제시된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불이익이었다.

[A-15] 첫째, 투표 인센티브제는 선거권의 본질적 가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센티브제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찬성 측이 방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입론에 담지 않기 때문에, 반대 측도 이에 대해 대응할 수가 없다. 따라서 [A-15]에서는 해당 토론의 ‘찬성 측이 주장하는 투표 인센티브제 방안’보다는 ‘투표 인센티브제’ 자체의 불이익을 주장한다. 이는 투표 인센티브제의 세부 절차에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투표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행위 자체의 불이익을 주장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논제를 보고 반대 측이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불이익의 성격에 따라 양적 불이익과 질적 불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A-9]는 질적 불이익의 예이다.

[A-9] 둘째, 대체복무제의 악용 소지가 존재합니다. 매년 연예인 운동선수 고위 층 자녀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를 가장한 병역 기피자들까지 급증할 수 있습니다.

[A-9]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불이익으로 ‘악용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치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매년 유명인들이 병역 기피를 하는 현상을 지켜봐 온 사람들의 통념을 기반으로 대체 복무제가 시행되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A-13] 또한 생산성 감소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34세 미만 근로자 대비 55세 이상 근로자의 비교 결과 임금은 55세 근로자가 3.2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육십 퍼센트로 이대로라면 근로자의 고령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은 다섯 배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 성장률이 낮은 때에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A-13]은 양적 불이익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A-13]에서 반대 측은 정년 연장을 하면 다섯 배의 비용이 늘어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 주고 청중을 설득하고 있다.

[A-3]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민간 조사업법의 내용적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탐정법 도입이 미칠 현실적 영향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현실적인 근거를 들어 탐정법 도입에 반대합니다.

[A-5] 즉 서머타임제의 실익에 대해 지금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실효성보다 더욱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서머타임제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해도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대 측은 논제의 불이익을 제기할 때 위와 같은 프레이밍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정책은 양면적이라 추진할 때의 이익이 있으면 불이익 또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이익과 불이익은 하나의 정책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발견된다. 반대 측은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제기함에 앞서 논제에 드러난 정책을 바라볼 관점을 변화시키려 한다. [A-3]에서는 찬성 측이 주로 탐정법에 대해 옹호할 근거인 내용적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현실적 영향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임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탐정법은 사회적 안정성에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5]에서는 서머타임이라는 정책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국민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불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비판 논증의 내용 구성 양상

불이익과 같이 분석 자료에서 자주 활용된 반대 측의 전략은 ‘비판’이다. 본 연구가 분석한 토론 자료는 정책 논제 토론일지라도 전반적으로 논제에 제시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을 논쟁하는 전형적인 정책 토론보다는, 논제에 제시된 행위에 담긴 가치, 필요와 정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유사 정책 논제 토론의 성격이 짙었다. 따라서 어떤 정책에 담긴 가치, 전제 등을 비판하는 주장이 자주 드러났다. 본 분석 자료에서 드러난 비판 논증의 양상을 다음 <표 7>와 같이 제시한다.

<표 7> 비판 논증의 내용 구성 양상

하위 범주(사고 단위)	해당 자료	비율
용어 표현에 대한 비판	A-4	9%(1/11건)
제도의 목적에 대한 비판	A-8,A-19, A-20	27.2%(3/11건)
제도의 전제에 대한 비판	A-2, A-7, A-9, A-14,A-16,A-17, A-18	63.6%(7/11건)

<표 7>과 같이 본 자료에서 드러난 비판 논증은 찬성 측이 사용한 용어 표현에 대한 비판, 제도가 지향하는바, 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가치 기반에 대한 비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전제에 대한 비판이었다.

[A-14]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제도가 현대 사회의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능력주의라는 합당한 선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취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구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병역 이행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지향점과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14]에서는 군가산점제가 구직자의 직무수행능력보다는 병역 이행의 여부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반대 측은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도 비판하기도 한다.

[A-8] (전략) 마지막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은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중략) 정책이란 많은 사회적 요소들을 분석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논거와 같이 안보와 현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군복무기간 단축은 만들어낸 공약에 불과합니다.

[A-8]에서는 군복무기간 단축이라고 하는 정책의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즉 ‘안보와 현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현 대통령의 원래 공약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대선 직전 발표한 공약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론 시 찬성 측이 사용한 언어 표현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관찰되었다.

[A-4] (전략) 그리고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표준은 교육의 본질에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의 국제적 표준은 오히려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 창의, 교육 그리고 교과과정의 우수성, 그리고 학생의 삶 만족도에 있다고 봅니다.

[A-4]에서는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9월 학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주요 언어 표현 중 하나인 ‘교육의 글로벌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입학 시기만 선진국을 따라한다고 세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신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반대 측의 입장을 선명하게 만들고 보다 심화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이 논제 관련성과 마찬가지로 선결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A-4]에서는 이러한 비판 쟁점을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앞에 배치했어야 할 것이다. 즉, 토론 평가자가 이 ‘비판’을 수긍하여, 9월 학기제가 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세부적인 주장을 듣지 않고도 찬성 측의 논리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A-4]에서 반대 측은 이러한 전략적 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3) 해결 가능성 논증의 내용 구성 양상

마지막으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해결 가능성(solvency)을 반박하는 논증을 편다.

〈표 8〉 해결 가능성 논증의 내용 구성 양상

하위 범주(사고 단위)	해당 자료	비율
문제 원인을 잘못 진단	A-1, A-2, A-6	23%(3/13건)
현실적인 실행의 문제 있음	A-4, A-8, A-9, A-12, A-13, A-17	46.1%(6/13건)
본질적인 방안이 아님	A-11, A-15, A-18, A-19	30.7%(4/13건)

〈표 8〉과 같이 본 자료에서 드러난 해결 가능성 논증에는 문제의 원인을 공박하거나, 논제의 행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본질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양상이 고루 나타났다. 이 중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한 것은 논제의 행위가 예산, 절차 등의 문제로 현 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A-13] 둘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업 정년의 평균 연령은 57.2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절반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효율적인 시행은 어렵습니다.

[A-13]에서는 정년 연장 의무화가 현실화되기 힘든 이유로 현재 명예퇴직들이 많아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절반 이하인 것을 들고 있다. 또는 논제 행위가 문제 원인을 잘못 분석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먼저 [A-6]은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반대 측 입론이다.

[A-6] 하지만 담배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는 비탄력적 재화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천 원 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인 흡연율 감소를 불러오지 못할 것입니다.

[A-6]에서는 담배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비탄력적 재화, 중독성이 강한 재화라는 것을 분석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의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인과 논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본질적인 방안이 아님을 주장할 수도 있다.

[A-15]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원인은 시민의 정치 책임의식 약화와 취업과 생계 등 개개인의 삶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율

하락의 근본 원인은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A-15]에서는 투표 인센티브제로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투표율이 낮은 것은 시민의 정치 책임의식 약화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투표 인센티브제로 투표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인 정치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반대 측 토론자는 자신을 찬성 측과 대등하게 생각하며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려는 ‘주도적 반대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찬성 측 입론과 직접적인 연계를 맺으며 입론하기보다는 논제를 통해 간접적인 연관 관계를 맺으며 토론에 돌입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찬성 측의 입론이 논제를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고, 재확인하는 수준의 입론이기 때문에 반대 측도 찬성 측의 입론보다는 논제를 매개로 찬성 측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준비 등에서 전략상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본 자료에서는 대다수가 전통적인 반대 측 입장인 ‘현재 상태를 옹호하기’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학습자들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대체 방안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추상적인 기조 정도만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짜 놓은 토론의 틀을 검증하는 ‘절차적 논증’을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였다. 일부 토론 자료에서 ‘논제 관련성’ 논증이 겉보기에는 활용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실제 찬성 측의 토론

틀을 검증하지 못하고, 찬성 측에 대한 간접적 반응으로 기능할 뿐이었다.

본 자료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실질적인 논증으로 ‘불이익’, ‘비판’, ‘해결 가능성’ 논증을 골고루 활용하였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논의 초반부에 논의의 전제를 제시하거나 재초점화 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책 논제로 토론하되, 전형적인 정책 토론의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비판’ 논증을 활용하여 논제에 제시된 행위에 담긴 가치, 필요와 정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비판’은 정책 논제 토론과 가치 논제 토론과의 접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논증 전략 중의 하나이며 학습자의 가치 판단 능력,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논증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화된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문제의 원인을 공격하거나, 실행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요컨대 가장 시급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부분은 토론에서의 반대 측의 책임과 권리, 토론 운영에 대한 거시적인 인식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반대 측 토론자들은 토론자의 역할과 책임,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시적 논증 구조에 익숙하지 못하였고 토론을 큰 틀에서 점검할 수 있는 절차적 논증에 취약점을 드러내었다.

또한 정책 논제 토론의 특징은 논제를 구체화한 찬성 측의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양쪽이 갑론을박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해당 논제를 자신의 입론에서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논제의 행위에 대한 추상적인 반박에 힘쓰다 보니,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응호와 반박이 전반적으로 실종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토론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토론의 중요 양대 측인 반대 측이 어떤 구조로 논

증하여야 하는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정립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논증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특히 정책 논제 토론을 중심으로 반대 측 토론자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을 토론자의 논증 구조, 입장 구성, 그리고 세부적 논증 전략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토론 양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후 정책 논제 토론의 반대 측 토론자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등학교 토론 대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초·중학교 학습자들이 반대 측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떤 문제점을 보이는지, 그리고 토론 대회가 아닌 교실 토론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7. 1. 31. 투고되었으며, 2017. 2. 14. 심사가 시작되어 2017. 3. 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주환(2016a), 「대학생 토론 담화의 반박 전략 분석」, 『화법연구』 31, 45-71, 한국화법학회.
- 김주환(2016b), 「대학생 토론 담화의 입론 구성 연구」, 『화법연구』 34, 31-64, 한국화법학회.
- 박재현(2013),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에 제시된 정책 논제의 적합성 분석」, 『새국어 교육』 96, 139-165,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재현(2014a), 「정책 토론의 입론 구성 교육 연구」, 『우리말글』 60, 93-121, 우리말글학회.
- 박재현(2014b), 「초·중·고 학생의 정책 토론 입론 양상 분석: 피해와 내재성 쟁점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25, 159-187, 한국화법학회.
- 여미란·허경호(2012), 「토론 평가형식의 문제점 분석과 새로운 평가형식: 1:1 토론형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0(1), 87-114,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육영주(2013), 「토론 유형에 따른 반박 전략」, 『한국언어문화』 50, 165-187, 한국언어문화학회.
- 이민형(2015),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형식 유형 연구: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0(3), 122-160, 국어교육학회.
- 이민형(2016), 「가치 논제 토론 수업을 위한 설계 기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지원·허경호(2015), 「아카데미식 토론의 입론 전개 방식에 따른 설득 효과: 설득 지식 모델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8, 79-113, 한국소통학회.
- Ericson, J., Murphy, J., & Zeuschner, R. (2013), 『디베이트 가이드』, 서종기 역, 서울: 길벗(원서 출판 2011).
- Bartanen, M. (1987), "Application of the issues agenda paradigm to speaker duties in value debates," *Contemporary Argumentation & Debate* 8, 42-51.
- Berube, D. (2002), "A Radical Complaint," *Contemporary Argumentation & Debate* 23, 85-90.
- Freeley, A., & Steinberg, D. (2013), *Argumentation and Debate: critical thinking for reasoned decision making* (13th Ed.), Boston, MA: Wadsworth.
- Hollihan, T., & Baaske, K. (2005), *Arguments and Arguing* (2nd Ed.),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Inc.
- Hill, B., & Leeman, R. (1997), *The Art and Practice of Argumentation and Debate*,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Wood, R., & Goodnight, L. (2006), *Strategic Debate*, Columbus, OH: McGraw-Hill.
- Wood, S., & Midgley, J. (Eds.) (1989), *Prima facie: a guide to value debate* (2nd Ed.), Dubuque, Iowa: Kendall Hunt Pub Co.
- Ziegelmüller, G., & Kay, J. (1997), *Argumentation: Inquiry & Advocacy* (3r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정책 토론에서의 반대 측 내용 구성 양상

이민형

본 연구는 정책 논제 토론을 중심으로, 실제 고등학교 토론 대회에서의 반대 측 토론자의 입론을 수집하여 반대 측 토론자들이 토론할 때 보이는 양상을 반대 측 토론자의 논증 구조, 현 상태에 대한 입장 구성, 그리고 구체적 논증 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반대 측은 찬성 측 주장에 논제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반응을 보이고, 대다수가 전통적인 반대 측 입장인 ‘현재 상태를 옹호하기’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학습자들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짜 놓은 토론의 틀을 검증하는 ‘절차적 논증’을 전반적으로 토론에 대한 거시적 지식의 부족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본 자료에서 찬성 측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실질적인 논증으로 ‘불이익’, ‘비판’, ‘해결 가능성’ 논증을 활용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핵심어 국어교육, 토론교육, 반대 측, 입론, 입증 책임, 추정, 절차적 논증, 실질적 논증, 현재 상태, L-R-I 구조

ABSTRACT

The Study for Debate Strategies of the Negative Team in Policy Proposition Debate

Lee Minhyung

This study recognizes the lack of domestic studies that focus on the role of the opposition team and understand its strategi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It aims to provide a macroscopic perspective of the negative team that is essential to prepare and manage a debate on policy proposition.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d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first negative constructive in high school debates, and obtained results by learning the relevant strategi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oppositions use various strategies. However, they lacked effective reasoning and justification, and was not strategically presented because they can't focus the affirmative case and form the L-R-I structure.

KEYWORDS Korean Education, Debate Education, Negative, Constructive Speech, Burden of Proof, Presumption, Procedural Arguments, Substantive Arguments, L-R-I structure